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년 7월 21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7월 13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7월 1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7월 2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문화국장 송오섭)

- 가. 제안이유
 -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의 전문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
 - 일반직 계 : 1,180명 → 1,177명(감 3)
 - 6급 이하 : 1,116명 → 1,113명(집행기관 감 3)
 - 별정직 계 : 3명 → 6명(증 3)
 - 6급 상당 이하 : 2명 → 5명(집행기관 증 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구민중심의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보좌기능의 전문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- 총 정원은 1,184명으로 변동이 없으며, 집행기관의 일반직 6급 이하 3명 감원,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3명 증원함.

<별정직 증원내역 : 3명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급별 대상안 : 6급 상당 1명, 7급 상당 1명, 8급 상당 1명 - 소 속 : 구청장 비서실 - 주요 직무 : 일정관리, 수행업무, 보고사항 조율 등
--

※ 정원책정기준 부합여부 : 적합(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2항 관련)

구분	계	일 반 직	별정·정무직
책정 기준	100%	99%	1% 이내
개정 후 정원	1,184명	1,177명	7명
개정 후 비율	적합	99.41%	0.59%

- 다만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서 별정직공무원은 “비서관 ·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” 으로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제1항에서는 “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.” 고 되어 있으며, 제2항에서는 “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,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

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.”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, 금번 증원하고자 하는 3명의 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직무인지, 직무의 성질과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원을 증원하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